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6건의 개별 조례로 제정·운영되었던 것을 2007년 7월, 조례의 분산 및 복잡성을 해결하고 시민의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건의 조례를 통합 제정·운영하여왔음.
- 이후 조례는 법령개정 및 개별조례 제정 등으로 40여 차례 개정되면서 조례 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의회운영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 또한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회 및 시민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마. 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바.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 사. 관계공무원 등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2, 팩스 032-440-8762, 이메일 dtree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주 소 :<br>○성 명 :<br>○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별첨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강령)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장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12조(회의일수) ① 법 제44조제2항과 제4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되, 회의 총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매년 회기운영계획을 1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영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5월 넷째 주 화요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15조(개회식) 의회는 매 회기 최초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 제4장 의장과 부의장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8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

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 제5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매월 120만 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 매월 30만 원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연 4,151만 원으로 하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표

2. 국외여비 :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표

⑥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의석배정 및 최초 임사회)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6장 위원회 관리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대변인, 브랜드담당관, 감사관,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

실, 재정기획관,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관광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광역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인천영상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 4. 산업경제위원회

가. 투자유치전략본부(국제협력 사무를 제외한다),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 5. 건설교통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 6. 교육위원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전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또는 안전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장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3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7. 제4호의 교육기관 및 제5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로 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와 제30조부터 제35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와 제32조부터 제3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22조제5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철도<br>운임 | 선박<br>운임 | 항공<br>운임 | 자동차<br>운임 | 현 지<br>교통비<br>(1일당) | 숙박비<br>(1야당) | 식비<br>(1일당) |
|------|----------|----------|----------|-----------|---------------------|--------------|-------------|
| 시 의원 | 1등급      | 2등정액     | 정액       | 정액        | 20,000              | 46,000       | 25,000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22조제5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화)

|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br>운임 | 자<br>동<br>차<br>운<br>임 | 등급별 국외여비<br>지급기준 |                     |                          |                     | 준 비 금     |                        |           |
|-----------------|----------------------------------------------|---------------------------------------------|----------|-----------------------|------------------|---------------------|--------------------------|---------------------|-----------|------------------------|-----------|
|                 |                                              |                                             |          |                       | 등<br>급           | 일<br>비<br>(1일<br>당) | 숙<br>박<br>비<br>(1야<br>당) | 식<br>비<br>(1일<br>당) | 15일<br>미만 | 15일<br>이상<br>30일<br>미만 | 30일<br>이상 |
| 의 장<br>·<br>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br>구별이 있는 경우에는<br>최상급등급의 철도<br>임 | ○2등급 이상의 등급<br>구별이 있는 경우에<br>는 최상등급의 선<br>임 | 1등<br>정액 | 실<br>비<br>액           | 가<br>등<br>급      | 40                  | 205                      | 133                 | 150       | 180                    | 210       |
|                 |                                              |                                             |          |                       | 나<br>등<br>급      | 40                  | 149                      | 99                  |           |                        |           |
|                 |                                              |                                             |          |                       | 다<br>등<br>급      | 40                  | 118                      | 72                  |           |                        |           |
|                 |                                              |                                             |          |                       | 라<br>등<br>급      | 40                  | 100                      | 61                  |           |                        |           |
| 의 원             | ○등급구별이 없는 경<br>우에는 그 승차에 요<br>하는 실비액         | ○등급구별이 없는 경<br>우에는 그 승선에 요<br>하는 실비액        | 1등<br>정액 |                       | 가<br>등<br>급      | 35                  | 166                      | 107                 | 140       | 170                    | 195       |
|                 |                                              |                                             |          |                       | 나<br>등<br>급      | 35                  | 120                      | 78                  |           |                        |           |
|                 |                                              |                                             |          |                       | 다<br>등<br>급      | 35                  | 92                       | 58                  |           |                        |           |
|                 |                                              |                                             |          |                       | 라<br>등<br>급      | 35                  | 79                       | 49                  |           |                        |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            |      |                  |        |      |
| 소속정당                                                                                                                                                                                                                                                                                               |            |      | 선<br>거<br>구<br>분 | 지 역 구  |      |
| 성<br>명                                                                                                                                                                                                                                                                                             | 한 글        |      | 비례대표             |        |      |
|                                                                                                                                                                                                                                                                                                    | 한 자        |      | 생년월일             |        |      |
| 겸<br>직<br>내<br>용                                                                                                                                                                                                                                                                                   | 기관·<br>단체명 |      |                  |        |      |
|                                                                                                                                                                                                                                                                                                    | 직 위        |      | 재직기간             |        |      |
|                                                                                                                                                                                                                                                                                                    | 보 수        | (택일) | 연<br>월           | 원<br>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30px; font-size: 1.1em;">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p> |            |      |                  |        |      |

※ 신고기한 :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임기 중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

[별첨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p>○ 제30조(의회의 설치)부터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까지</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시행령</p> <p>○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부터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까지</p> <p>“세부사항 별지 작성”</p>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p>“해당사항 없음”</p>                                                                                                                                                                                           |
| 특이사항      | <p>“해당사항 없음”</p>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결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결정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

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손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손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손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손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

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별첨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 4. 작성자